

조세 재정

2017. 2. 17(통권 제41호)

BRIEF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안종석 선임연구위원
강성훈 부연구위원
오종현 부연구위원



BRIEF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안종석 선임연구위원 (044-414-2210)

강성훈 부연구위원 (044-414-2207)

오종현 부연구위원 (044-414-2289)

I. 연구목적	02
II. 소득세 Tax Gap 추정	03
III.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추정	15



I 연구목적

- ● 지난 수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의 축소가 국세청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 탈세의 축소는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의 공정성을 개선하여 조세정책 등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탈세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과학화함으로써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세목별 탈세 규모와 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계획을 선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Tax Gap은 이론적 세부담과 실제 세부담의 격차를 의미함
 - 이론적 세부담은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함
 - Tax Gap은 탈세와 조세회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세의 Tax Gap 규모를 추정함
 - Tax Gap은 과소신고 갭과 과소납부 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소신고 갭을 국세청이 포착한 부분(관측된 과소신고 갭)과 포착하지 못한 부분(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으로 구분하여 추정함
 - 관측된 과소신고 갭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 등에 의해 국세청이 발견한 과소신고 금액을 의미하며,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은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과소신고 금액을 의미함
-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함
 -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추정결과가 있음
 -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추정결과가 나왔는데, 각 연구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음
- ● 지하경제 추정방법은 미시자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함

- 거시자료를 사용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현금통화수요함수에 기반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방법을 사용함
 - 모형의 형태와 사용한 변수의 차이에 따라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형과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II 소득세 Tax Gap 추정

- ●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 갭을 추정하는 것임
 - 종합소득세 납세자를 사업자와 비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소신고 갭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임
 -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의 신고자료에 의존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신고자의 수가 많고,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 등이 많아 과소신고 갭 발생 가능성과 소득대비 과소신고 세액 비율이 높은 편임
 - 참고로 『국세통계연보』 「3-1-2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신고액 총액에서 사업·부동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귀속) 기준 93.59% 인데, 사업자의 경우 이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경우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확보하기가 용이하여 비사업자의 과소신고 갭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정신고 또는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 등을 통해 국세청이 발견한 과소신고 갭은 존재함
- ● 본 연구는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 갭을 관측된 과소신고 갭과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으로 구분하여 추정함
 - 관측된 과소신고 갭은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과소신고한 세액 중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세액을 의미하며,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은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세액을 의미함

- 관측된 과소신고 갭의 경우, 사업자 그룹과 비사업자 그룹 모두에 대해 국세청이 경정신고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포착한 과소신고 갭이 있음
-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은 사업자 그룹에 대해서만 추정함
 - 사업자 그룹은 탈루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이 발견하지 못한 과소신고 갭이 있을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비사업자 그룹은 탈루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 중에서도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과소신고 갭 중 관측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하지 않아 0으로 가정함
-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처럼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
 - 국세청에서는 과소신고 갭 추정을 목적으로 2012~2013년 귀속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하여 2011년의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갭을 추정함
 - 안중석 외(2016)에서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의 Tax Gap을 추정하였는데, 그 자료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1년 기준 과소신고 갭을 추정함
 - 그런데 2011년 무작위 표본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가 없으므로 2012~2013년 세무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분석결과를 2011년 모집단에 적용하여 추정함

1.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의 추정

가. 분석방법

- 본 절에서는 무작위 표본추출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을 추정하고, 다음 절에서 관측된 과소신고 갭과 더하여 총과소신고 갭을 산출함
 -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이란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과소신고를 하였으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서 오류, 누락, 조세회피 등을 발견하지 못해 징수하지 못한 과소신고 세액을 의미함

-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행위에 대한 자료를 구축함
 - 수정신고나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납세자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였음
 - 국세청이 이 집단의 신고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 갭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임
- ● 무작위 표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모집단의 과소신고 갭을 추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표본을 구성한 각 집단에서의 과소신고율을 그대로 모집단에 반영하여 모집단의 과소신고 갭을 추정하는 것임
 - 표본이 충분히 많아 표본평균이 신뢰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표본이 각각 500개와 497개, 2개년도 합하여 997개로써 표본 수가 적은 편임
- ●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본 원자료 분석방법 외에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방법을 보완하는데, 표본 원자료 분석과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 (표본 원자료 분석) 표본 원자료를 사용하여 신고세액 대비 과소신고 세액 비율을 산출하고 이 비율을 모집단에 적용하여 과소신고 갭을 추정함
 - (1단계) 무작위 표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업종별 · 수입금액 분위별로 당초신고세액과 과소신고 세액을 산출함
 - (2단계) (1단계) 결과값을 사용하여 업종별 · 수입금액 분위별로 당초신고세액 대비 과소신고 세액 비율을 산출함
 - (3단계) (2단계)에서 산출한 당초신고세액 대비 과소신고 세액 비율을 모집단의 당초신고세액에 업종별 · 수입금액 분위별로 적용하여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을 추정함
 - (4단계) (3단계)에서 추정된 업종별 · 수입금액 분위별 과소신고 갭을 모두 합산하여 총과소신고 갭을 산출함

- (계량 모형 분석) (1) 사업체의 특성에 따른 사업체별 과소신고 확률 및 과소신고율에 대한 회귀방정식을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2) 추정된 회귀방정식에 모집단의 납세자 과세정보(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 수입금액, 업종)를 반영하여 과소신고 갭을 추정함
 - (1단계) 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 수입금액, 업종의 차이가 과소신고를 할 확률 및 과소신고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과소신고를 할 확률 및 과소신고율을 설명하는 회귀방정식을 구축함
 - 과소신고율은 $[\text{과소신고 세액}/(\text{당초신고세액}+\text{과소신고세액})\times 100]$ 을 의미함
 - (2단계) Tobit과 Two-Part 추정방식을 사용하여 (1단계)에서 구축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함
 - (3단계) (2단계)에서 추정된 회귀방정식에 모집단의 납세자 신고자료-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 수입금액, 업종 더미 변수 값을 반영하여 모집단 내 개별 납세자의 과소신고 세액을 추정함
 - (4단계) 납세자별 과소신고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모든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을 추정함
- 계량모형 분석의 장점은 납세자의 과소신고 요인을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그 추정결과에 모집단 개별 납세자의 특성을 적용하여 개별 납세자의 과소신고를 추정한다는 점임
 - 즉, 과소신고를 유발하는 사업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근거로 모집단의 과소신고를 추정하므로, 과소신고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과소신고를 축소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추정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한편 계량모형 분석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계량모형에서 고려한 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 수입금액, 업종의 고유한 특성 외에 다른 요인들이 과소신고 확률 및 과소신고율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회귀분석에서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임
 - 회귀분석에서 고려한 탈루행위에 대한 주요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의 영향은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오차항에 포함됨

- 모형에서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좋아지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른 지표를 찾지 못하였음
- ● 본 연구에서는 표본 원자료 분석과 계량모형 분석을 병행하여 상호 비교함으로써,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되는 과소신고분과 계량모형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과소신고분을 비교함

나.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

- ● 표본 원자료 분석을 통해 추정한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율은 31% 정도이며, 계량모형의 표본 추정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보다 6~9%포인트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이 분석결과는 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 수입금액, 업종의 고유한 특성 외에 다른 요인들이 탈루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표본분석에서 드러난 과소신고 갭의 80% 정도는 모형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20% 정도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과 단순한 오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1〉 2011년 (귀속) 추정모형별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

(단위: 백만원, %)

구분	표본 원자료 분석	Tobit 모형 분석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 분석
과소신고 갭	3,508,873.8	2,504,073.0	2,202,706.1
과소신고율 ¹⁾	31.39	24.62	22.32

주: 1) 과소신고율은 관측된 과소신고 갭에 대한 당초신고세액과 관측된 과소신고 갭은 포함하지 않고,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에 대한 모집단 당초신고세액+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에서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표본 원자료 분석 결과와 계량모형 분석 결과의 차이가 단순한 오차라고 보기에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소신고 갭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앞으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개별 사업체의 특성 중에서 과소신고를 할 확률과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 갭 규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무작위 표본조사 자료 중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 수입금액, 업종별 더미 변수만을 사용하였는데,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을 생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계량모형 분석 중에서는 Tobit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과소신고 갭이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의 경우보다 높게 추정됨
 -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Tobit 모형은 과소신고 여부와 과소신고 세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반면,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은 이를 구분하여 두 개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Tobit 모형과 달리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은 과소신고 여부와 과소신고율에 대한 의사결정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는 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 수입금액, 업종의 고유한 특성 등이 과소신고확률과 과소신고율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실제 추정결과를 비교해보면, 과소신고확률과 과소신고 세액에 대한 설명변수의 계수값과 부호가 서로 다르게 추정됨
 - 결과적으로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에 비해 Tobit 모형은 설명변수의 계수값을 추정할 때 제약을 가지며, 이로 인해 Tobit 모형과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의 과소신고 갭 추정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2. 관측된 과소신고 갭과 총과소신고 갭 추정

가. 관측된 과소신고 갭 추정

- ● 본 연구는 2011년(귀속) 국세청 경정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자와 비사업자에 대한 종합 소득세의 관측된 과소신고 갭, 즉 납기 후 경정을 통한 과소신고분을 산출함
 - 관측된 과소신고 갭은 사업자의 과소신고 갭과 비사업자의 과소신고 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관측된 과소신고 갭은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정세액에서 당초신고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 관측된 과소신고 갭 = [경정세액 - 당초신고세액]
- ● 2011년 관측된 과소신고 갭(납기 후 경정을 통한 과소신고분)은 1조 3,856억원이며, 관측된 과소신고율은 22.59%임
 - 사업자 그룹과 비사업자 그룹에 대한 관측된 과소신고 갭은 각각 1조 3,350억원과 507억 원이며, 관측된 과소신고율은 각각 23.67%와 11.38%임

〈표 2〉 사업자 그룹과 비사업자 그룹에 대한 2011년 (귀속) 관측된 과소신고 갭과 과소신고율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신고세액	과소신고 갭 ¹⁾	과소신고율 ²⁾
	A	B	(B/(A+B))×100
사업자	4,304,065.6	1,334,975.7	23.67
비사업자	445,311.6	50,664.6	11.38
합계	4,749,377.2	1,385,640.3	22.59

주: 1) 신고납부세액과 경정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음

2) 과소신고율은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에 대한 모집단 당초신고세액과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은 포함하지 않고, (관측된 과소신고 갭에 대한 당초신고세액+관측된 과소신고 갭)에서 관측된 과소신고 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나. 총과소신고 갭

- ● 총과소신고 갭은 관측된 과소신고 갭과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의 합으로 나타남
 -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은 국세청에서 포착하지 못한 과소신고 갭을 의미하며, 앞 절에서 표본 원자료 분석과 계량모형 분석을 통해서 추정하였음
 - 관측된 과소신고 갭은 법정 신고기일 내에 신고한 당초 신고에서는 과소신고하였으나 기한이 지난 후 경정신고 또는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 등을 통해 경정된 것으로서 국세청에서 포착한 과소신고 갭을 의미함

- ● 표본 원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종합소득세의 총과소신고 갭과 과소신고율은 각각 4조 8,945억원과 24.45%이며, 이는 계량모형 분석방법의 결과보다 높은 수준임
 - 과소신고율은 이론적 세부담 대비 총과소신고 갭 비율을 의미함
 - 이론적 세부담 = 당초신고세액 +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 + 관측된 과소신고 갭

- ● Tobit과 Two-part 모형(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의 모집단 추정치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총과소신고 갭은 각각 3조 8,897억원과 3조 5,884억원이며, 총과소신고율은 각각 20.46%와 19.13%임
 - Tobit 모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총과소신고 갭과 총과소신고율이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경우보다 더 높으며,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obit 모형이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에 비해 좀 더 제약적이기 때문임

〈표 3〉 2011년 (귀속) 분석방법별 종합소득세 총과소신고 갭 및 과소신고율

(단위: 억원, %)

분석방법	이론적 세부담	당초신고세액 ¹⁾	총과소신고 갭	총과소신고율
	A=B+C	B	C	C/A×100
표본 원자료 분석	200,652	151,707	48,945	24.45
Tobit 모형 분석	190,604	151,707	38,897	20.46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 분석	187,591	151,707	35,884	19.13

주: 1) 전체 모집단 당초신고세액은 관측된 과소신고 갭에 대한 당초신고세액과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에 대한 모집단 당초 신고세액의 합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 총과소신고율을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율과 관측된 과소신고율로 구분해 보면 〈표 4〉와 같음
- ● 2011년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율은 추정방법에 따라 11.74~17.53%의 범위에 있음
 - 표본 원자료 분석 결과, 관측된 과소신고율은 6.92%,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율은 17.53%임
 - Tobit 모형의 모집단 추정치 분석 결과, 관측된 과소신고율은 7.29%이고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율은 13.17%임
 -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의 모집단 추정치 분석 결과, 관측된 과소신고율은 7.39%이고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율은 11.74%임

〈표 4〉 분석방법별 2011년 관측된 과소신고율과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율

(단위: %)

분석방법	관측된 과소신고율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율	총과소신고율
	A	B	C=A+B
표본 원자료 분석	6.92	17.53	24.45
Tobit 모형 분석	7.29	13.17	20.46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 분석	7.39	11.74	19.13

자료: 저자 작성

다. 과소신고 갭 추정의 한계점

-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는 무작위 표본 수가 작아 좀 더 정확하게 회귀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임
 - 본 연구의 무작위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통계치 및 추정치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향후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 갭을 추정하는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위한 무작위 표본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계량모형 분석에서 탈루행위가 주로 수입금액 대비 과세표준 비율, 수입금액, 업종의 고유한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으나, 표본 원자료 분석 및 계량모형의 표본 추정치 분석결과는 주요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이 탈루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과소신고 갭이 편의(bias)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계량모형의 개발 및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구축을 통해 계량모형의 설명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무작위 표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가 탈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은 본 연구에서 추정한 추정치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됨

3. 세목별 Tax Gap 추정결과 종합

- 안중석 외(2016)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주요 세목의 과소신고 갭을 추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갭 추정결과와 안중석 외(2016)의 다른 세목 과소 신고 갭 추정 결과, 그리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소납부 갭을 모아서 세목별 Tax Gap 규모를 정리하면 <표 5>와 같음
 - <표 5>의 경우, 대항목으로 구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추정한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에 포함하여 구성함
 - 과소납부 갭은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기한내에 하지 않는 체납된 세액을 의미함
 - <표 5>에서는 과소납부 갭과 과소신고 갭을 합한 총 Tax Gap을 제시하였는데, 과소납부 갭은 체납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소신고 갭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표 5>에는 (1)~(3)의 세 개의 패널이 있는데, 이 구분은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갭 추정방법에 따른 구분임
 - 종합소득세 외의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적용하여 각 패널에서 소득세 Tax Gap에만 차이가 있고, 다른 세목은 패널 간 차이가 없음
- 추정결과를 보면, 주요 세목의 Tax Gap 합계가 2011년 신고분 기준으로 25조 5천억~26조 8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정확하게 신고한 경우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14.4~15.1%에 해당하는 규모(Tax Gap 비율)임
 - 총Tax Gap 중에서 70.1~71.6%를 과소신고 갭이 차지하고, 28.4~29.9%를 과소납부 갭이 차지함
 -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Tax Gap이 11조 7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소득세 6조 7천억~8조원이며, 법인세 Tax Gap은 5조 9천억원임

〈표 5〉 세목별 Tax Gap 추정결과 종합

(단위: 억원, %)

(1) 표본 원자료 분석						
	이론적 세부담 (a) ¹⁾	기한내 신고세액 (b) ²⁾	무신고, 과소신고액 (c=a-b) ³⁾	과소납부액 (d) ⁴⁾	총 Tax Gap (e=c+f)	Tax Gap 비율 (f=e/a)
소득세 ⁵⁾	509,781	444,472	65,309	14,993	80,302	15.8
법인세	458,734	403,375	55,359	3,901	59,260	12.9
부가가치세	611,145	550,373	60,772	55,755	116,527	19.1
개별소비세 ⁶⁾	167,537	165,246	2,291	368	2,659	1.6
상속·증여세	36,148	27,816	8,332	1,314	9,646	26.7
합계 ⁷⁾	1,782,838	1,591,282	192,063	76,331	268,394	15.1
(2) Tobit 모형 분석						
소득세 ⁵⁾	499,733	444,472	55,261	14,993	70,254	14.1
법인세	458,734	403,375	55,359	3,901	59,260	12.9
부가가치세	611,145	550,373	60,772	55,755	116,527	19.1
개별소비세 ⁶⁾	167,537	165,246	2,291	368	2,659	1.6
상속·증여세	36,148	27,816	8,332	1,314	9,646	26.7
합계 ⁷⁾	1,772,790	1,591,282	182,015	76,331	258,346	14.6
(3) Truncated Normal Hurdle 모형 분석						
소득세 ⁵⁾	496,720	444,472	52,248	14,993	67,241	13.5
법인세	458,734	403,375	55,359	3,901	59,260	12.9
부가가치세	611,145	550,373	60,772	55,755	116,527	19.1
개별소비세 ⁶⁾	167,537	165,246	2,291	368	2,659	1.6
상속·증여세	36,148	27,816	8,332	1,314	9,646	26.7
합계 ⁷⁾	1,769,777	1,591,282	179,002	76,331	255,333	14.4

- 주: 1)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
 2) 신고서의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 합계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적게 하여 발생한 Tax Gap
 4) 기한내 신고하였지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액
 5) 비사업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무조사에 다른 경쟁액만 포함
 6) 개별소비세(유류·경마장 입장행위·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품목),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 및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농특세 포함
 7)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부세는 ①세수비중이 크지 않거나 ②추정 근거가 되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③Tax Gap 발생 가능성이 낮아 측정하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III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추정

- ● 본고에서는 거시적 접근법 중의 하나인 현금통화수요함수에 기초하여 1975~2015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함
 -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도 거시적 접근법에는 전력수요함수에 기초한 방법과 다중지표다중요인(Multiple Indicators Multiple Causes) 모형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음
 - 다만 다른 방법들은 기준연도 대비 상대적인 지하경제의 규모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지하경제 비율을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현금통화수요함수에 기초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은 지하경제의 발생원인이 세부담 회피에 있고, 지하경제에서는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것임
 - 현금통화수요함수의 설명변수에 세부담을 추가하여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그 추정 결과를 사용하여 추정하는 연도의 현금통화수요와 세부담이 0일 때의 현금통화수요를 각각 추정하여 그 차이를 지하경제에서의 현금통화수요라고 정의함
 - 추정된 지하경제에서의 현금통화수요에 통화유통속도를 곱하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1. 현금통화수요함수와 지하경제 추정방법

- ● 현금통화수요함수는 아래의 식 (1)과 같은 로그계열과 식 (2)와 같은 원계열을 가정한 경우에 대해 추정함
 -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로그계열과 원계열 중 어느 것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주요 변수 외의 통제변수들이 지하경제의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달라져 추정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 아래에서 C_t 는 현금통화, M_t 는 광의통화, TAX_t 는 세율변수, X_t 는 기타 통제변수들을 의미함

- 통제변수들로는 전체 현금통화 발행잔액에서 5만원권의 비율, 1인당 실질 GDP, 명목이자율, 국민소득 대비 피용자보수 등을 고려함

$$\ln\left(\frac{C_t}{M2_t}\right) = \beta \ln(1 + TAX_t) + X_t\gamma + \epsilon_t \quad \text{식 (1)}$$

$$\left(\frac{C_t}{M2_t}\right) = \beta TAX_t + X_t\gamma + \epsilon_t \quad \text{식 (2)}$$

- 선형연구에서는 로그계열을 이용한 Log-Log 형태와 원계열을 이용한 Level-Level 형태의 회귀식을 가정한 분석이 모두 존재함
 - 로그계열을 이용한 선형연구로는 Tanzi(1983), 이우성(2001), 배민근(2005) 등이 존재함
 - 원계열을 이용한 선형연구로는 노기성·윤여필(2007), 강문수 외(2015) 등이 있음
- 위 식 (1)과 (2)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OLS 추정법과 더불어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Prais-Winsten 추정법을 이용함
 - Tanzi(1983)는 계열상관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Cochrane-Orcutt 추정법으로 현금통화수요 함수를 추정함
 - 하지만 Cochrane-Orcutt 추정법은 첫 번째 관측치가 사라지는 문제점이 존재함
 - Prais-Winsten 추정법은 이와 같은 Cochrane-Orcutt 추정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방법임
 - 또한, Prais-Winsten 추정법은 FGLS(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d) 추정법으로 일단 현금통화수요함수가 추정된 이후에는 OLS 추정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함
 - 다만, OLS 추정법에 비해 Prais-Winsten 추정법은 잔차의 계열상관 모수(ρ)를 추가적으로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OLS 추정법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음

-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현금통화수요함수로부터 지하경제를 대변하는 현금통화 규모를 추정하고, 그 추정치에 통화유통속도를 곱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 지하경제의 통화유통속도는 공식경제의 통화유통속도와 같다고 가정함
 - 총통화량에서 지하경제 현금통화량을 차감한 부분을 공식경제 통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GDP를 공식경제 통화량으로 나누면 공식경제 통화유통속도를 산출할 수 있음
- ● 공식경제에서의 통화유통속도를 산출할 때 총통화량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음
 - 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계로 정의되는 협의통화(M1)와 협의통화(M1)에 2년 미만의 저축성예금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예금 및 신탁을 포함하는 광의통화(M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산출한 유통속도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히 달라짐
- ●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협의통화(M1)를 이용하였으나 광의통화(M2)를 사용한 선행연구도 존재함
 - Tanzi(1983), 강문수 외(2015) 등은 총통화량으로 협의통화(M1)를 가정함
 - 반면, 노기성 · 윤여필(2007)은 총통화량으로 광의통화(M2)를 가정하여 분석함
- ● 선행연구가 주로 협의통화(M1)의 유통속도를 적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것은 지하경제의 유통수단이 현금이라는 기본적인 가정하에 현금과 가장 유사한 개념의 통화량 유통속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광의통화(M2)의 유통속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금융시장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화유통속도는 광의통화(M2)의 유통속도임

- 지하경제의 유통수단은 주로 현금이라는 측면에서는 협의통화(M1)의 유통속도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하경제에서는 공식경제에서보다 통화유통속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의통화(M2)의 유통속도가 더 적절할 수도 있음
 - 지하경제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만나 재화를 화폐와 교환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어 통화 유통속도가 공식경제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협의통화(M1)의 유통속도를 기본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되, 민감도 분석에서 광의통화(M2)의 유통속도를 적용한 경우도 추정하여 협의통화(M1)의 유통속도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함

〈표 6〉 지하경제 규모 추정의 세부방법론

구분	종속변수	추정방법	총통화량	선행연구
방법 1	로그계열	OLS	협의통화(M1)	이우성(2001), 배민근(2005)
방법 2			광의통화(M2)	
방법 3		Prais-Winsten	협의통화(M1)	Tanzi(1983)
방법 4			광의통화(M2)	
방법 5	원계열	OLS	협의통화(M1)	강문수 외(2015)
방법 6			광의통화(M2)	노기성·윤여필(2007)
방법 7		Prais-Winsten	협의통화(M1)	
방법 8			광의통화(M2)	

- 주: 1. 이우성(2001)과 배민근(2005)은 총통화량에 대한 정의를 밝히지 않음
 2. 이우성(2001)은 공적분 관계를 추정하였다고 밝히나 오차수정모형으로 추정한 것인지, 장기관계식을 OLS로 추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3. 배민근(2005)은 추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4. Tanzi(1983)는 Prais-Winsten 추정법과 유사한 Cochrane-Orcutt 추정법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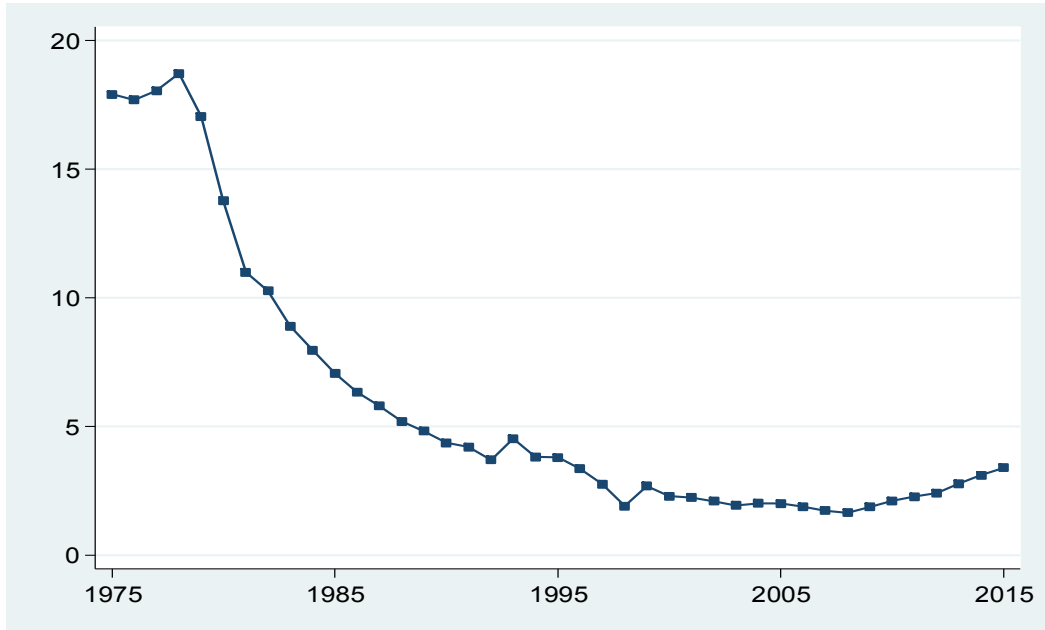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세율변수의 선택

- ● 현금통화수요함수 추정 시에 세부담으로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명목세율을 단순평균하여 산출한 평균소득세율, 소득세 법정 최고세율, 그리고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을 적용하여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음
 - 평균소득세율은 사전적 세부담 지표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명목세율을 단순평균한 것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다른 세목의 세부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음
 - 최고소득세율은 평균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사전적 세부담 지표이지만, 저소득 계층도 조세 회피를 통해 지하경제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계층의 세부담만 대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모든 세목을 포괄하는 세부담 지표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납세자가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사전적 지표가 아닌 사후적 지표라는 문제가 있음
- ● 현금통화수요함수 추정 결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현금통화수요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아 이 지표들을 사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지 못하였음
 - 현금통화수요함수의 종속변수인 광의통화(M2) 대비 현금통화의 비중은 최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그림 1] 참고)
 - [그림 2]의 사전적 세율 변수들 또한 [그림 1]과 유사한 추세를 나타냄
 - 반면 [그림 3]의 사후적 세율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현금통화수요함수의 종속변수와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현금통화수요함수의 종속변수인 (C/M2)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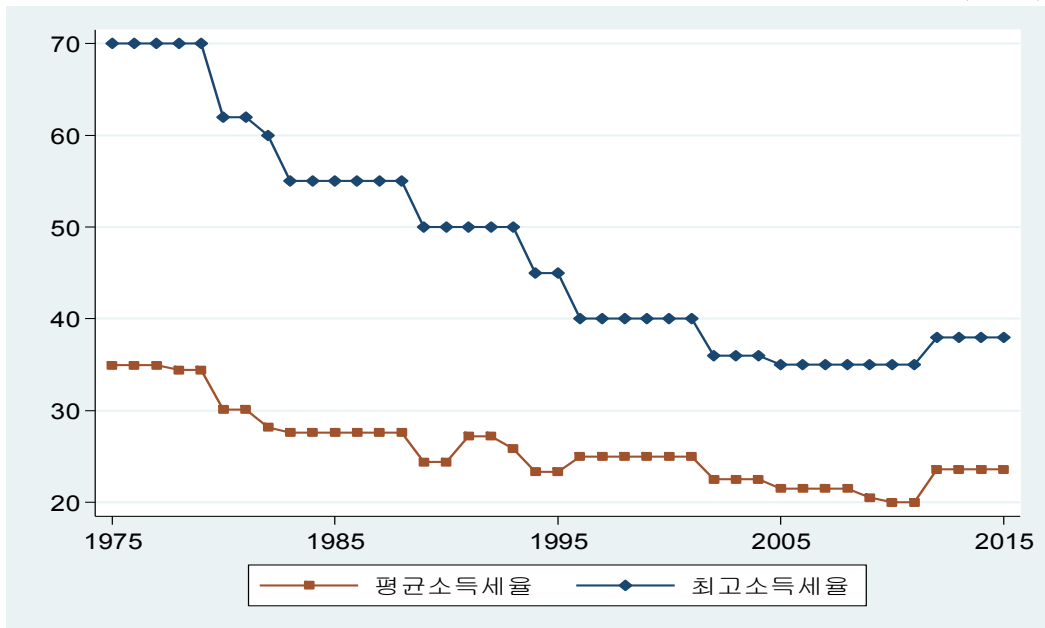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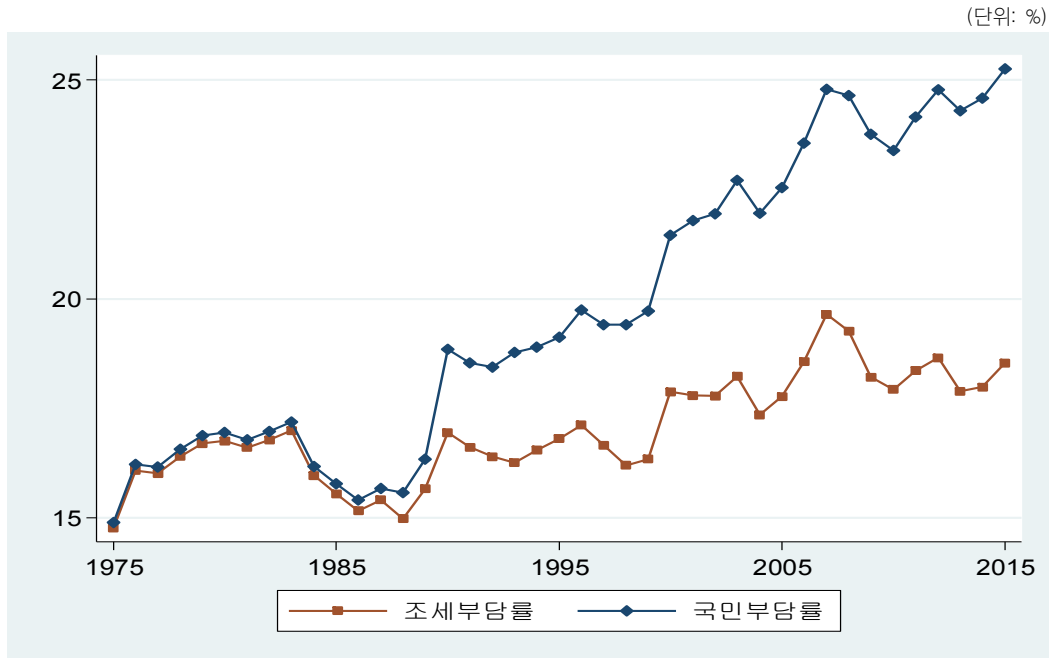
[그림 2] 사전적 세율 변수의 추이

(단위: %)



자료: 1. 평균소득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연도별 소득세제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최고소득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각 연도별 소득세제 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사후적 세율 변수의 추이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현금통화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함
 - 첫 번째로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에 적합한 변수가 아니라는 해석임
 - 두 번째로는 조세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총통화 대비 현금통화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현금통화수요함수 추정 모형이 그 다른 요인으로 인한 영향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해석임
 - 즉, 조세 외의 다른 변수들이 현금통화수요 감소를 충분히 잘 설명한다면, 세부담과 현금통화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임
 - 세 번째 해석은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이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에 적합한 변수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하경제의 규모가 매우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으로 추정될 수 없다는 해석임

- 위 세 가지 해석 중 세 번째 해석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은 모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적합한 변수라고는 할 수 없으나 평균소득세율 등 다른 변수들에 비해 동 변수들에 대한 장점도 존재함
 - 평균소득세율은 사전적 세부담에 대한 지표라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세율의 변화만 반영할 뿐 과세표준 구간의 변화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과세체계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제에서 소득단계별 세율을 단순평균한 것이라는 점도 문제점 중의 하나임
 - 반면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은 사후적 세부담에 대한 지표라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과세체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 그러므로 어느 것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증적으로 보면 평균소득세율이 현금통화 수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그것이 모형의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평균소득세율과 현금통화수요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평균소득세율이 더 적합한 지표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해석에서와 같이 조세 외의 다른 변수들이 조세 외의 요인에 따른 현금통화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잘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 경우, 같은 모형을 사용한 분석에서 평균소득세율과 현금통화수요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평균소득세율이 현금통화수요에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연히 나타난 통계적인 관계일 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임

- ●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금통화수요 모형을 활용해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할 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사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세부담의 증가가 현금통화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임
 -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 두 지표가 세부담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는 점과, 세부담 외에 현금통화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는 것으로 추측됨

3. 지하경제 규모 추정 결과와 시사점

- ● 평균소득세율을 세부담 지표로 사용하여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현금통화수요함수 추정 시 사용한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 공식경제 대비 지하경제의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 ● 종속변수로 총통화 대비 현금통화 비율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원계열 추정의 경우보다 총통화 대비 현금통화 비율에 로그를 취하여 사용한 로그계열 추정에서 최근의 지하경제 규모가 현저하게 작게 추정됨
 - 2015년의 공식경제 대비 지하경제 비율을 보면, 로그계열 추정에서는 5.33~7.96%, 원계열 추정에서는 그보다 대여섯배 큰 것으로 나타남
- ● 시계열의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OLS로 추정하였을 때와 자기상관을 고려하여 Prais-Winstone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를 비교해 보면, Prais-Winstone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지하경제 규모가 작게 추정됨
 - 로그계열에서는 OLS 추정에서 6.65~7.96%, Prais-Winstone 추정에서 5.33~6.43%로 나타남

- 원계열의 경우 2015년 공식경제 대비 지하경제 비율은 OLS 추정에서는 로그계열 추정에 비해 대여섯배, Prais-Winston 추정에서는 네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 추정모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모형의 설명력, 추정계수의 유의성 및 이론적 예측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계열 추정보다는 로그계열 추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로그계열을 가정한 경우에 현금통화수요함수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남
 - 로그계열의 현금통화수요함수 추정 결과 결정계수(R²)가 OLS 추정에서는 0.97~0.99, Prais-Winston 추정에서는 0.90~0.93으로 나타남
 - 한편, 원계열의 경우 OLS 추정에서는 0.93~0.97로 높은 편이나, 계열상관을 제거한 Prais-Winston 추정에서는 0.67~0.81로 낮아짐
 - 개별 설명변수의 상관계수에 대한 추정치를 비교하더라도 로그계열을 가정한 경우에 방향성이 직관에 더 부합하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음
- 본 연구의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총통화 지표로 협의통화(M1)를 사용하였을 때에 비해 광의통화(M2)를 사용하였을 때 지하경제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로그계열의 경우에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총통화로 협의통화(M1)를 사용한 경우에 2015년 지하경제 규모가 공식경제의 7.96%인데, 총통화로 광의통화(M2)를 사용하면 이 비율이 2.38%로 낮아짐
- 현금통화수요함수의 종속변수를 로그계열로 가정하고 총통화량을 협의통화(M1)로 정의한 경우 우리나라의 공식경제 대비 지하경제 비율은 1975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변화는 총통화량을 광의통화(M2)로 가정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남

- ● 특히 2013년~2015년 공식경제 대비 지하경제 비율은 각각 8.72%, 8.49%, 7.9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이는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외환위기 등의 더미변수 없이 OLS로 추정한 경우의 분석 결과임
 - 민감도 분석에서 동일한 경우에 대해 5만원권에 대한 효과를 반영한 경우 최근 3년간의 공식경제 대비 지하경제 비율은 10.08%, 9.88%, 9.30%로 위 수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세부담 변수와 마찬가지로 5만원권의 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현금통화수요는 지하경제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지하경제 규모임
 - 2015년의 공식경제 대비 지하경제 비율인 7.96%(9.30%)를 규모로 환산하면 약 124조원(145조원)에 이르는 수치임

- ● 평균소득세율 대신 최고소득세율을 세부담 지표로 이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경우에도 현금통화수요함수 추정 시 사용한 종속변수의 형태에 따라 공식경제 대비 지하경제의 비율이 상당히 다르게 추정됨
 - 종속변수를 로그계열로 가정한 경우 2013년~2015년 지하경제 비율은 10.06%, 9.83%, 9.28%로 추정됨
 -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외환위기 등의 더미변수 없이 OLS로 추정한 경우임
 - 반면, 원계열로 가정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지하경제 비율이 로그계열을 가정한 경우보다 네배 정도 높게 추정됨
 - 평균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최고소득세율을 이용하여 현금통화수요함수를 추정한 경우에도 원계열보다는 로그계열을 가정한 경우에 모형의 설명력과 추정계수의 유의성 및 이론적 부합성이 높아 로그계열로 추정한 경우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 이와 같은 추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금통화수요함수에 기초한 지하경제 추정결과가 추정방법, 변수의 선택, 변수 적용 방법 등에 따라 추정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므로 본 연구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결과만으로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단정할 수 없음

- 본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핵심적인 변수인 세부담 변수와 통화량 변수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있으며,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정결과가 상당히 달라짐
- 추정모형으로 원계열을 사용하는지, 로그계열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짐
-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 세부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통화수요 변화를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통화 대비 현금통화수요 비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그 원인이 모형 안에서 충분히 설명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참고문헌 |

- 강문수 · 노기성 · 권선주 · 배득중 · 성명재 · 전병목,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방법과 추정치의 국제 비교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 총서 15-15-01, KDI국제정책대학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 노기성 · 윤여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과세기반 확충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07-11, KDI, 2007.
- 배민근, 「우리나라 지하경제비중 줄고 있다」, 『LG 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5. 12. 28, pp. 34-38.
- 안종석 · 김학수 · 박명호 · 강성훈 · 신상화 · 이동규, 『세목별 Tax Gap 추정과 조세관련 지하경제 규모 추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이우성,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 어느 수준인가」, 『LG 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1. 4. 25, pp. 4-25.
- Tanzi, Vito, "The underground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estimates, 1930-80," Staff Papers 30 (2), 1983, pp. 283-305.

〈웹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최종접속일: 2016. 12. 15.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 최종접속일: 2016. 11. 21.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최종접속일: 2016. 11. 21.
-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tats.oecd.org/>, 최종접속일: 2016. 12. 13.



BRIEF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2017. 2. 17(통권 제41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503
 - 팩 스 : 044-414-2509
 - 인쇄처 : 아미고디자인
-

